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49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여기구 · 윤준병 · 임호선
주철현 · 이병진 · 문금주
문대림 · 이원택 · 서삼석
임미애 · 송옥주 · 최혁진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등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 및 「상법」에 따른 검사인 또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의 발기인, 이사, 감사 등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영

여금을 배당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완화하고, 손해배상책임 도입함으로써 금전적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함(안 제43조의2 신설 등).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4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 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5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이하 “검사인”이라 한다),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제43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6조제3항의 검사인 및 제4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67조의 검사인, 제5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제58조의 위반행위를 하여 조합에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의 2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제58조(조합의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 ① ----- ----- ----- ----- ----- ----- ----- ----- ----- ----- -----. <삭제>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
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
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
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2. (생략)

3.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
을 때

4. (생략)

<신설>

2. (현행과 같음)

<삭제>

4. (현행과 같음)

② 검사인 또는 제56조제1항에
서 규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를 하였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1. 조합을 설립할 때 조합원의
수, 출자금의 인수(引受), 출
자금의 납입 또는 제11조제6
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총회(창립총
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하였을 때

	<u>2.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여</u> <u>이익이나 잉여금을 배당하였</u> <u>을 때</u>
--	--